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2022. 12.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 |
|----------|--------|
| 의안 번호 | 22-133 |
|----------|--------|

2022. 12. 1.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안 자 : 마포구청장(자원순환과)
- 나. 제 안 일 : 2022. 11. 15.
- 다. 회 부 일 : 2022. 11. 18.

2. 제출이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위원회 조항 재정비 및 근거법 명시
(안 제5조의2)
- 다. 별지 제2호 서식 기금출납부 변경 및 정비
- 라.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삭제, 적절하지 않은 단어 및 표현 수정 및 문맥 재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59조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22. 10. 6.~ 10. 26.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3) 가족행복지원과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1(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 고려)과 관련한 의견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위 조례 제정안 제2조제4항, 제13조제3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 자체개선안에 동의함.

- 4)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재활용품의 판매수입과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을 기금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치가 필요할 때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적용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아울러,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을 준용하여 문구 및 문맥을 재정비하고자 제안됨.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의 설정과 연장에 대한 근거 법령의 직접적인 명시를 삭제하고 현행 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 까지 5년 연장함.

- 안 제5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의 위원회 심의사항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중복계재로 판단하여 삭제하였음.
- 아울러, 위원의 자격을 기정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전문가’에서 ‘기금운용 또는 청소·재활용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한정 명시함.
- 안 제5조의2 제5항~제8항은 보궐 위원의 임기 관련 사항과, 위원의 재척·회피·기피·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신설함.
- 안 제5조의3 제3항, 제4항, 제5조의5 제2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원회 조례」에 적용된다는 사유로 삭제함.
- 안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 계재로 판단하여 삭제하였음.
-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당연 규정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였음.

다. 종합의견

-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수집확대로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원활한 수집·선별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설치되었음.
- 마포구의 2021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을 보면
 - 아이스 팩 세척·배송 용역
 -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물품 구매
 -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투명페트병 및 비닐 별도배출 홍보물
 - 폐합성수지 재활용제품, 투명페트병 재활용 텀블러 가방제작
 - 재활용비닐봉투 제작 구매
 - 자원순환교육 행사 관련 위탁운영비와 교재 구매 등이 있음.

- 집행부에서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선별 처리를 위한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을 관리하기 위해 존속기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본 개정조례안의 존속기한 연장 조문의 기타 개정사항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법률의 구조적 정합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자료를 보면 기금의 지출액은 1억6,381만 8,860원이고, 조성액은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및 의료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사용료와 예치금의 이자로 8,694만3,771원으로 기금 수지가 맞지 않고, 사업 지출금을 제외한 9억9,881만3,537원은 예치금으로 금고에 보관하고 있음.

<표 1. 기금결산 총괄 내역(3년)>

(단위 : 원)

| 구분 | 전년도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 | | 당해연도말 조성액 |
|-------|---------------|--------------|-------------|-------------|----------------------|
| | | 계 | 조성액 | 사용액 | |
| 2021년 | 1,075,688,626 | △76,875,089 | 86,943,771 | 163,818,860 | 998,813,537 |
| 2020년 | 1,221,011,564 | △145,322,938 | 90,733,782 | 236,056,720 | 1,075,688,626 |
| 2019년 | 1,167,706,582 | 53,304,982 | 258,536,092 | 205,231,110 | 1,221,011,564 |

- 이 같은 상황은 기금의 재원 조성과 목적 사업 지출이 한정적이고 대부분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금의 활용이 저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법정기금을 제외한 자체기금 설치시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기금 일몰제를 운영하고 있고,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지출 사업의 목적성을 검토

하여 중장기적으로 기금의 존폐를 심의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기금의 사업들이 편성되어 의회 예산심의권의 확보와 동시에 효과적인 재정운영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 최근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폐지 지방자치단체 현황>

| 계 | 서울시 자치구 | 기타 시·군·구 |
|----|--------------------|-------------------------|
| 9곳 | 양천구, 서초구, 성동구, 강서구 | 무안군, 고흥군, 완도군, 장흥군, 광양시 |

※서울시 자치구 중 기금 미설치 현황 :

<표 3. 지방자치단체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현황>

| 계 | 서울시 자치구 | 기타 시·군·구 |
|-----|---|--------------------|
| 13곳 | 마포구, 동작구, 종로구, 노원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강북구, 강남구 | 제주시, 봉화군, 진도군, 강진군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